

광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519443(본소), 2023가단529270(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구상금]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85078(본소), 2023나85085(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51944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포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이상택, 김광현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장경진, 정문수
변론종결 2023. 6. 21.
판결선고 2023. 8.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411,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3. 8.

-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는 원고(반소피고)가, 9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3,796,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17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6. 12. 23. 06:15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목포시 D 부근 교차로를 갓바위 방면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반대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그곳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E(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교차로 안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나. 곧이어 F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신호에 따라 G 방면에서 갓바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원고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이하 ‘후행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고는 피고차량의 각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9. 7. 16.까지 후행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302,083,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피고에게 89,661,46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보험금으로 지급한 298,871,700원에 원고의 책임비율 30% 및 후행사고 기여도 40%를 곱한 35,864,604원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89,661,4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3,796,856원(= 89,661,460원 - 35,864,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보험금으로 지급한 302,083,800원에 후행사고 기여도 40%를 곱한 120,833,520원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89,661,46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구상금 31,172,060원(= 120,833,520원 - 89,661,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후행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이고, 원고와 피고는 각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후행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후행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후행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70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선행사고와 후행사고의 각 충격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선행사고 직후에 후행사고가 발생하였고 뇌손상의 경우 선행사고로 인한 1차손상과 후행사고로 인한 2차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입원비 등 손해내역에 대하여 선행사고의 손해 범위와 후행사고의 손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구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되, 선행사고 및 후행사고의 각 충격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고 경위 및 이 법원의 H단체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결과에 비추어, 선행사고의 기여도는 60%, 후행사고의 기여도는 40%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차량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피고는 원고차량 보험자인 원고에게 36,250,056원(= 302,083,800원 × 기여도 40% ×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30%)을 구상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89,661,4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3,411,404원(= 89,661,460원 - 36,250,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4.(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2023. 8. 16.(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구상금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